

<사례 4-119> 스토킹을 당해왔으나, 스토킹은 방지법 안이 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⁵⁷⁾.

제 5 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성폭력은 운 나쁜 몇몇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풀어야 할 사회적인 과제이다. 앞 장에서 성폭력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 분석결과는 기존의 법·제도와 사회적 통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상담사례들은 이제 우리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1) 피해자의 보호 확대와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 성폭력 범죄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1994년 1월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성추방 정책의 기본 틀이다. 이 법이 마련된 계기는 그 동안 보이지 않던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드러내어 '이름(naming)'을 주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성폭력 추방 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법 제정 촉구에 의해서였다⁵⁸⁾. 이와 함께 여성폭력을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57) 막상 스토킹을 인식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먼저 생기고 일상의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기에...”, “한참 서로 좋아하더니만...”, 하면서 편잔과 꾸중 비난은 절대 금물이며, 스토킹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관련사실을 설명하고 전화 또는 웹사이트로 상담·신고 할 수 있다. 김연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진한도서, 2003, 349~350면 참조.

침해로 인식하고 이를 추방해야 한다는 UN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영향과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이 법은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게 했다. 그동안 전국 11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2개의 피해자 보호시설이 개소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장에서는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 권리 인정을 제안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폭력 특별법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서는 성폭력을 따로 개념정의하지는 않은 채, 기존의 각 법안에서 해당하는 죄를 열거하며 이를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⁵⁸⁾. 이처럼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58) 이미경,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권리 존중”,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 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학술회의 토론자료」, 2002. 12 참조.

59) 성범죄의 정의에 관해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협의로는 형법상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죄(형법 제297조~제305조)와 성풍속을 해하는 죄(형법 제241조~245조)를 의미하며, 이 범죄 중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범죄(예 강간, 강제추행)를 최협의의 성범죄라 할 수 있다. 이밖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도강간(제399조), 해상강도강간(제340조 제3항)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가 있고, 이들의 성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범죄의 동기가 성적 욕구에 기인해 있는 절도, 주거침입(의설목적), 상해, 살인(성적충동) 등을 포함한 성범죄를 최광의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박종선,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2001, 각주 94) 재인용.

대한 침해라는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형법 개정 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칭이 되는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조를 대신하는 어떠한 보호 법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부 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의 제목을 삼는 식의 법 개정에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 여성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⁶⁰⁾ 이전의 성경험 유무,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등을 반복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검찰청(1999)과 경찰청(2003)에서 마련한 수사지침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피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전의 성관계 유무나 피해 시의 느낌까지 질문을 받고 있고, 그 곤혹스러움이 두 번 세 번 강간당하는 듯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법과 사회적 인식이 성폭력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순결 상실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그 행위가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내야만 강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더욱이 상대가 데이트 상대였거나, 함께 잔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숫처녀가 아니거나 나아가 성매매 여성이라면 훨씬 불리한 상황

60)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된다⁶¹⁾. 또한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아니오’는 ‘아니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의 경우에는 젠더화된 센슈얼리티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무언의 동의’로 가정케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성 이중규범, 즉 남성과 여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성규범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혼전 순결이 문제시되고, 때로는 이로 인해 가정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회인 현실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행동에서 주체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관계를 강하게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자신의 거부로 인해 애인이 며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성 행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누구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에 피해자의 반항과 거부 여부가 요구되는 것은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해자가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둘만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관점인 것은 다른 성폭력 사건 해결에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과연 피해자가 처해 있는 젠더의 권리 관계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거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가 최근 KBS 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경우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⁶²⁾.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운동권 내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피해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조직 보위와 운동적 대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은폐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61) 매기년, 엄용희 역, “강간 :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01, 71면

62) 전희경, “KBS노조 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 쟁점들”,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엮음, 2003.

최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⁶³⁾. 만약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새롭게 정의된다면 비동의 간음죄는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다.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거부의 수위는 어디까지인지도 논쟁적이다. 최근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처럼 폭행과 협박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도되고 있는 점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⁶⁴⁾. 한편 수사 담당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피해자의 관점이 갖는 역효과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진짜 피해자를 ‘꽃뱀’으로 의심하는 방법이 아닌, 보다 명확한 수사 방법으로 구별해내야 할 문제라고 본다.

3) 부부강간의 처벌

현재 부부강간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부부강간 피해의 실태는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대해 이백수 변호사는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내가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⁶⁵⁾”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부인에 대한 강간죄는 인정이 된다. 다만, 대법원이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특수한 신분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하면서 부부간의 강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대법원의 해석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아내강간의 부정성을 아내의 몸과 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⁶⁶⁾ 아내강간을 가정폭력특별법 상의 ‘가

63) 조국, 앞의 책, 2003, 65-72면

64)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2001:155 ; 이박혜경, 2001 ; 황정미, 2001:194

65) 아내강간에 형법이 개입하게 되면 부부간의 또는 가족내의 대립이 격화되고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화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조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16면 참조.

66) 물론 부부관계는 특수하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남편이 처를 폭행·협박해서 강제로 간음해

정보호사건'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⁷⁾. 즉, 피해를 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로 보호를 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1) 아내에 대한 접근제한,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3) 보호관찰, (4) 가정폭력특별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6)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내강간의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고 국가형벌권 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강간의 개념도 문제이다. 성폭력 범죄 중 강간죄, 즉 형법 제297조의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들고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 법적으로는 남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간 피해를 당했어도 성추행 피해자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임신 이란 무거운 짐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남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범행 결과의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제외한 생물학적 영향만을 고려한 것으로 비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강간의 성립요건을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성기에 이물질의 삽입 등의 행위는 강간으로 규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도 된다고 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라면, 처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부인을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적 우월감을 만끽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인을 강간죄의 행위객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000. 221면 참조.

67) 조국, 앞의 논문, 29면 참조.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대부분 성폭력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진술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소나 신고를 기피하여 암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를 위하여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중인 신문의 금지, 반복 신문 등을 회피할 것이 요구되며,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그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피해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어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입게 할 염려가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성폭력 범죄의 조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들이닥치는 보도진들에게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공개는 물론 피해 내용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와 초상권의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부당함의 문제만큼이나 보도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대응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⁶⁸⁾.

68)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경찰서의 수사 서류나 법정 서류에 그의 신원이 드러나게 된다. 문제는 미디어의 사건보도에 있어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의 공개 여부이다. 언론에 의해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피해자는 불결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성적 수취심과 보복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위의 비난은 성폭력 행위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우며 분노를 야기하여 성폭력 피해를 더 지속화하게 된다. 표창원, “형사절차와 피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교육』, 2003.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가 연대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계몽 차원에서 개발한 '피해자 유형과 심리상태에 따른 수사상 유의점'에는 아동 피해자 진술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즉 어린이가 피해 정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에 다르게 표현할 경우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줄 것과, 장시간 진술로 인한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녹음이나 녹화의 방법으로 검찰과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⁶⁹⁾.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제도는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절차에서도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보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의 기억이 잊혀질 수도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비디오로 녹화하도록 하여 증거로 보전하여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의 비디오 증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아동보호의 측면에서 증인과 피고인 간의 직접적인 대면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⁷⁰⁾⁷¹⁾, 비디오로 녹화·녹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적극

69)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와 진료, 2000.

70) 독일 형사소송법 제58조a 【증인신문의 녹음·녹화】

(1) 증인신문은 비디오나 녹음기에 녹화·녹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녹음을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범죄피해자이거나,
2. 증인이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증인신문의 녹음·녹화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때이다.

(2) 비디오-녹음기의 사용은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이 허용된다.

71) 독일 형사소송법 제255 a조 2항 【비디오-녹음테이프의 녹음의 사용】

(2)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형법 제174조부터 184c조)와 생명에 대한 범죄(형법 제211조부터 222조)에 대한 소송에서 16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을 녹

적인 활용이 제기되던 바 최근(2003.11.19)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의 영상물로 촬영·보존토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 시 영상을 촬영에 의한 증거 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피해자의 증인 신문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또한 최근(2003. 11.19)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 4에 의하면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때에는 비디오 등 기타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대질 신문에 따른 공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해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의 표현으로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증인 진술의 증거 인정은 적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에 반하게 되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증인 신문의 조치로서, 특수 유리장치인 일방통행식 거울(one-way mirror)로 차단 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대질 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⁷²⁾.

화한 비디오-녹음테이프의 녹음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판기일전의 신문과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과 함께 참여했음을 요건으로 한다. 증인에 대한 보충신문은 허용된다.

72) 이에 대해 미국의 Line-up제도는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가 자기와 모습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범한 자와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 앞에서 모습을 보이는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최근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이 가해자에 의해 명예 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고소의 특성은 첫째, 성폭력 고소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 혐의를 부인하는 강한 수단이자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 노력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악용된다. 둘째, 성폭력 고소 이후 유죄 판결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수사 기관, 재판 기관에 자신의 무죄와 ‘피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합의 또는 협상의 카드로 악용한다. 셋째, 성폭력 유죄 판결 이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2중 처벌’ 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제기하며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 한다⁷³⁾.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 사실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명예 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 된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수사, 재판을 받을 때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 예를 들어 비공개 재판,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수사상 동일성 확인 절차로 범인인지 절차 제도가 있다. 박종선, 앞의 논문, 69-70면) 참조.
73) 장임다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발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 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2002, 7-9면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뢰 관계인의 동석은 일부 범죄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성폭력 범죄 전체로 넓혀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법 조항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동석해야 한다”로의 무규정이 되어야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실제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면서 경찰서나 경찰청에 동행하는 경우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잘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2003년 11월에 있었던 성폭력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다소 강제성을 띤 조항을 신설하고, 신청권자를 법정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신청권자의 확대 및 일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축소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피해 대상도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의무화 및 적용 범위 확대)이 필요하다.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성폭력 사건은 앞서 보았듯이 물적인 증거가 남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정자나 체모, 상처 등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진술 증거 외에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료지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균 2~3곳의 개인 산부인과나 종합 병원을 전전해야만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01년에는 <여성폭력 긴급 의료지원센터>가 전국 7개의 병원으로 지정되어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이 264개소가 있지만, 진단서 발급이나 인공유산의 시술 등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당한 4살 어린이가 진료 거부로 인해 35시간 동안이나 헤맨 사건이 보도된 이후, 관련 부처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효율적인 의료 지원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이를 통한 증거 확보가 미비한 이유는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자 교육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벌칙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정 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치와 함께 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담당 의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증언을 하는 경우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 의료관계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다.⁷⁴⁾

의료지원 체계를 현실화하는 외에도 증거가 많지 않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최소한 피해자측이 제공하는 증거를 폐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74) 의사들이 성폭력 사건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담당 의사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점도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법정 출석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수사기관 내에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하는 팀(경찰, 검찰)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담 기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의식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 경찰 및 전담 검사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경찰, 검찰, 시민 단체, 의료진의 각 지원 체계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찰, 검찰의 전담팀과 전국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및 12개 보호시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담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피고인측 변호인에 의한 무차별적 반대 신문이 행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다.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는 경우 재판 지침에 대한 개발 및 시행이 용이해질 것이다.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생활 영역에 대한 부당한 질문이라든가, 피해와는 무관하게 수취심과 당혹감을 유발하여 인격권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무지한 성폭력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신문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성폭력피해자는 현행 형사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으로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와 공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수사와 공판에 대한 정보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숙지하게 하여 피해자 본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건 대응을 통해 실체적진실발견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닌 '알권리' 또는 '정보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혹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에게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공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의 진행 과정, 공소 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고지가 될 수도 있고, 경찰·검찰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의 인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피의자·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체포·구속 여부나 구속 취소, 보석 허가, 가석방, 만기 출소 등은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 진행에 대한 권리 외에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서 공판조사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2003년 8월 27일에 이경재 의원 외 51인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증언 내용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 보충적 권리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⁷⁵⁾.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며, 범죄의 당사자이다.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응하는 당사자적 위치에 있다고 볼 때 공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 열람권은 필수적이며, 더 이상 피해자를 증거의 대상, 소극적 증인의 위치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실체적진실발견 및 사법적 정의 구현의 의미도 있지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치유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소추주의에 의해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는 구도이긴 하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구분되고 막중한 업무량에 의해 공판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무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배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헌법은 제27조 제5항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속취소, 보석허가, 가석방, 양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의견 진술권으로서 결정은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의하며 재량 행사에 필요한

75)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72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제공의 의미를 가지므로 재판권의 침해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권, 공판기록열람권 인정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공판 절차참여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공개재판원칙에 의해 방청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공개시나 증거보전절차,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 등에는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게 되므로 명문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단지 참여만을 인정할 뿐 진행되는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형사소송 구조와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에 대한 요구권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국가소추주의의 이상이 피해자만을 대변하는 검사가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를 대신하는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공판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상소 여부의 결정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의 검사의 지위와 충돌하지 않는 권리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제도의 보완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성폭력 범죄는 여성의 정조나 순결에 흠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이다. 현재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4개 강력범죄 중 친고죄 규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폭력 범죄 뿐이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명예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낮은 신고율로 인해 가해자의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친고죄 폐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⁷⁶⁾. ① 성폭력은 심신에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으로서 강도, 살인, 방화 등과 같은 사회적 인권 침해 행위 이므로 누구라도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감추어 졌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남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 ③ 친권자(대리고소인)가 북인, 방치할 경우 고소나 법적 대응이 어려웠던 보호시설(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성폭력과 어린이 성폭행, 근친강간의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한 고소나 법적 대응이 쉬워진다. ④ 친고죄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한 우려는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방지할 수 있다. 경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자를 확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석방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친고죄가 폐지되면 자연히 고소시효기간이 없어지므로, 언제라도 용기를 내어 고소할 수 있게 된다. ⑥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단이 없도록 여성경찰 조사관제도 도입, 피해자 대리인 제도, 피해자 대리인의 참여 필요, 비공개수사, 재판 등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친고죄 폐지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 안에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 이후 요구되는 각종 보완조치 등을 좀더 심도깊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현재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한 교정 프로그램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된 가해자들이 출소 후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강간범의 경우 초

76) <http://www.women21.or.kr/news/articleview.asp?no=258&>

범율은 27.9%에 불과하고, 전과1범이 16%, 2범이 11.6%, 3범이 8.3%, 전과 4범 이상인 경우가 27.9%나 되고 있음을 볼 때⁷⁷⁾, 이들에 대한 교육과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교정교육의 대상을 전 성폭력범으로 늘리는 것에 관한 법규정과 함께 교육팀의 훈련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의 신설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1999년에 발의되었으나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되었다가 2003년 다시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도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고 그 피해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여성폭력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 포함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제정활동을 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형사절차에 민사 소송을 결합시켜 피고인의 유죄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같은 판결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법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함께 판단함으로써 신속한 원상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⁷⁸⁾.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실무상으로도 피해자에게 절차의 진행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법관의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적극적

7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64면.

78) 이재상/이호중, 앞의 글, 1993, 198면 참조.

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배상명령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적용법규가 없다⁷⁹⁾.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형벌법규의 법정형이 가벼움은 물론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합의 종용보다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구체화시켜야 한다⁸⁰⁾.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2003년도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강간범죄의 불기소처분은 45.48%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상 고소인과 고발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직권남용범죄,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형사절차법상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9)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력에 의한 상처의 치료 및 이후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돈을 노리고 고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통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80) 오선주/권오명, "범죄피해자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6권, 1999, 167면 참조.

2. 수사 · 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많은 여성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성폭력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실질적 기반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폭력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안드레아 드워킨, 1993; S. Griffin, 1986). 즉 성폭력은 수천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 문화의 기반이다. 문화란 넓게 이해하면 개인 사회성원의 사유와 행동의 기반이 되며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의 문화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 형사사법절차 담당자의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법적 · 제도적 차원의 문제인 것 이상으로 문화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화로서의 성폭력이 점차 축소되고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개선 끝지않게 성 인식과 성 감수성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 점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형사사법절차 담당자들의 교육문제를 살피고, 실무상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의 마련 및 정계절차의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1) 교육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

1993년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 사회는 국제 인권 체제가 여성들의 삶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웃음을 시인하고, 여성의 인권이 ‘양도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하며 불가분한 인권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UN은 성 특정적 인(gender-specific) 인권 침해를 역시 인권 의제의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1993년 12월 UN총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그것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특히 하나의 성차별 이슈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 및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인권을 핵심적 관심 영역들 중 하나로 확인하였다⁸¹⁾.

1995년 북경행동 강령은 제 201조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는 정부내의 정책조정 중심부서이며 주된 과제는 모든 정책분야에 양성평등 관점을 범 정부적으로 주류화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고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많은 국가가 양성 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⁸²⁾.

이와 같은 양성평등 주류화 사업은 국가의 모든 부서와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따라서 법무부 및 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법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주류화 사업과 관련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인 양성평등 주류화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하는,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성인지적 감수성과 지식을 지니는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다양한 법여성학 과목의 전공화, 법여성학과 기존 법학 과목간의 내용적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요구되는 데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성폭력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2위로 높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말해준다. 특히 성폭력 신고율은 2~6% 정도이므로 보고되지 않는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폭력 발생 국가일 개연성이 적지 않아 성폭력 발생 축소와 근절은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서 1차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1) 헬리리 찰스워스, “인권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제3회 김옥길 기념강좌 자료집, 2003. 10.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3, 86-87면.

82) 김선옥,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218면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과 형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소가 수행한 ‘법조인의 성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2003)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351명의 법조인들은 성 폭력 피해의 특성을 타당하게 이해하고 있고 성폭력 통념에 대한 수용도도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통념 조사에서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와 같은 몇 문항에서는 법조인들은 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는 평균적 통념 수준보다 더 강한 통념을 보여주고 있다⁸³⁾. 성 폭력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판검사들이 일반인의 잘못된 평균적 혹은 그 수준을 상회하는 성 통념을 보인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조사와 판결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낮은 성인지적 인식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형사법 절차상 담당자들의 성의식 변화가 없이는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법치주의 국가 기반 확충이라는 법무부의 목표는 현실화되기 요원하다고 보인다.

셋째로 여성문제는 다른 소수자 문제와 달리 남녀관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매우 포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여성학이 필수화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은 다른 소수자들과는 달리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숫자으로는 다수인 소수자이며, 여성문제는 인구의 다른 반인 남성 자신의 변화나 남성 중심적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全) 사회적인 소수자 문제이다.

83) 평균적 통념을 3이라고 할 때 검사는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문항에서 3.37점, 검사는 2.93점, 변호사는 2.78점을 보이고 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라는 문항에서는 판사는 2.93점, 검사는 2.94점, 변호사는 2.64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3, 26면.

① 법과 대학에서 법여성학의 필수화

법조계 종사자들의 성인식의 변화를 위해 성인지적 교육이 요구되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학부 과정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가 법여성학 담당 교수를 두고 법여성학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 다른 대학의 법대와 사법연수원, 경찰대학 등에서 법여성학은 개설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인용한 본 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판사의 81%, 검사의 59%, 변호사의 67%가 양성평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중 약 80%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를 교육을 받지 못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양성평등 교육의 보완이 필요함에는 동의하나 보완 방법으로는 필수과목 지정보다는 선택과목이나 재교육의 방식이 약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선호되고 있다.

법여성학을 필수과목화하지 못할 경우 선택과목화하는 것도 차선이기는 하나, 이 경우 사법 시험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법여성학이 지속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사법 시험에 법여성학 관련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제도적 견인 장치가 없는 한 선택과목화는 과목 개설을 하게 하는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 법여성학이 선택과목으로 있으나, 1999년 이후 개설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법여성학은 약 10년 전부터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호주의 경우 9개 대학에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최근에 필수화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힐러리 찰스워스, 2003(b)). 이에 비하면 한국의 법여성학 개설 현황과 논의는 국제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② 법여성학과 법학 과목의 내용 통합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노동자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

로 서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 구축이 법무부의 주요 목표이며 양성 평등의 주류화가 여성부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법 집행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법여성학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에 비추어, 앞에서는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나 전공과목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법여성학 혹은 여성주의 법학은 여성들의 욕구, 열망 혹은 특성들을 법의 설계와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비판 작업이다. 따라서 광의의 법여성학은 개론 과목으로의 법여성학을 넘어서는 기존의 법학 체계에 대한 대안적 가치관이나 파라다임의 성격을 지닌다. 즉 최근의 여성주의 법학자들은 법 언어와 그에 따른 법적 논증 자체가 성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상이 전제가 되는 법 영역은 남성의 관점과 경험에 의한 것이며 그 안에서 대부분의 여성의 경험과 관점은 설자리를 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형식논리에 익숙하고 사회의 중심부에서 살고 있는 법조인들이 법의 편파성을 깨닫고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보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과 법학을 연구하는 일은 대부분 남성들이 해왔으므로 그들에게는 일에서의 원리와 실제의 경험이 상이함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으며 그들의 규준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신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여성학의 대안적 파라다임으로의 성격이 있다⁸⁴⁾. 또한 법여성학은 내용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의 문제, 평등 사상의 변천과 양성평등의 관계, 양성평등을 위한 유엔의 정책과 그 변천, 고용·사회보장·가정생활과 양성평등, 성이중규범과 범죄, 국제법과 성차별, 간통죄·강간죄·낙태죄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특수 형벌과 양성평등 등과 같은 포괄적 내용을 다룬다⁸⁵⁾. 이와 같은 포괄적 범위의 광의의 여성학은 주제별로 기존의 다양한 법학 과목에 통합되어 갈 때, 법여성학과 기존의 법학, 둘 다가 함께 발전해갈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법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법학 교과들에 편재되어 기존 교과와 통합된 법여성학을 배울 때 성

인지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성별 감수성의 변화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개월에서 수 년간에 걸친 법관련 과목의 학습과정에서 법여성학 개론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법여성학적 내용을 접할 수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인식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법학 교과목에 법여성학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작업 역시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양성 평등 주류화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즉 관련 교육 기관들의 교과목들 속에 법여성학을 통합시키는 작업, 예를 들면 '법여성학 교수 워크샵'과 같은 작업을 교수들이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견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③ 관련 기관에서의 법여성학과 관련 과목의 내실화

2003년도 1학기에 개설된 이화여자대학교의 법여성학은 "법학도 또는 관련 전공자들에게 법여성학과 여성인권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하며 차별과 폭력, 빈곤, 소외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문제해결을 위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그 주요 목표를 둔다"고 교과 목표를 밝히고 있다⁸⁶⁾. 남녀평등 관련법의 국내외 입법 동향과 남녀차별 문제 및 여성폭력 문제와 법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수준의 법여성학은 예비 법학도가 사회 변화의 한 흐름으로서 양성평등의 주류화 경향

84) 학생들이 물젠더성(gender-blindness)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여성학 이전에 여성학 과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나, 물젠더성이란 사회 생활에서 성(gender)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사회적 변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은 사회과학 교양과목으로 법대에서 이 과목까지 필수화하기는 제도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학 과목의 수강은 권장 사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법 여성학이 필수화되면 학생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 여성학을 수강하리라 기대된다.

85)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74면.

85)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으로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볍대 이외에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과 같은 성폭력 형사사법 절차상의 담당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법여성학을 의무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에서 여성 관련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과정은 전체 교과과정 중 [여성과 법]과 민사법 계열의 [가족법연구]이다. [가족법연구]는 양성평등적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여성과 법]은 현재의 법조문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관련사안들을 대비시킴으로써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연수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약 1천 여명의 전체 연수생 중 3~4%인 30~70명의 극소수만이 이 수업을 듣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여성관련 법들을 둑어 여성을 전공 계열의 하나로 분류한 뒤 그 안의 한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⁸⁷⁾.

한편, 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는 매 기수마다 2시간씩 성폭력 관련 특장을 실행하고 있다. 10년이상 근무자를 재교육하는 경찰종합학교도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부후보생 신임 교육과정과 경력자 기본교육과정에 '성폭력범죄 예방 및 수사 요령'이라는 주제로 3시간 강의를 배당하고 있다. 경찰종합학교의 강의 내용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중시하여 피해자의 수사상 불만 사항과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⁸⁸⁾. 경찰청은 성폭력 조사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⁸⁹⁾. 이러한 조처들은 그 동안 여성계의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변화한 경찰 교육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은 매뉴얼이나 2~3시간의 강의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미미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아

의 뿌리를 이루는 완고한 인식 체계이며 감수성이기 때문에, 그 완고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체성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성교육도 일회적인 교육을 벗어나 하나의 독립 교과목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법여성학의 제도화(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광의의 법여성학의 각 교과목에의 통합)외에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성인지 교육 환경의 구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성(sexuality, gender)과 관련한 행동, 인식, 역할 등의 변화를 하는 성인지 교육은 대상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단순히 지식 학습 위주의 교육이 아닌 특강, 소모임이나 패널 토론과 역할극, 워크숍, 게임, 사례발표, 미술 표현,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추구한다. 특강의 경우 강사는 영화평론가, 변호사, 여성주의 드라마 작가, 성폭력 수사경력이 풍부한 수사관, 신경정신과나 산부인과 의사 등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성폭력 문제를 다각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NGO는 물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여성부 산하 기관에서도 공무원, 시민단체 실무자, 자원 활동가, 군인 등 다양한 범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다양한 방법의 성인지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특히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별고정관념이 때때로 아주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좋은 측면이 때때로 여성 혹은 남성이어서 안 좋은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경험을 점검하고 나누면서 성고정관념으로 인한 자신의 부정적 경험이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충분한

87)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88) 경찰종합학교, 「경사교육과정 - 기본교재」, 2003.

89) 경찰청,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 프로그램보다는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⁹⁰⁾.

이러한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볼 때, 형사사법절차상의 담당자 교육에서도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교육환경의 구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본 상담소는 성폭력 사건 내담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비정부 단체를 사법연수원의 전문연수기관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관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실무수습'이 잘 설계되어 실행되면, 우리사회 안의 성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관계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⁹¹⁾.

이외에도 범여성학 과목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나 드라마를 주고 팀을 나누어 토론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은 쉽게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역할극, 워크숍, 게임 등의 성인지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의 시간 속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특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여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창립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위탁교육이나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New South Wales)의 보건국은 <뉴사우스 보건 웨일즈 성폭력 서비스>(NSW Health Sexual Assault Services)라는 기구와 함께 <폭력방지 교육센타>(The Education Centre Against Violence)를 운영한다. 이 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는 성인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 생존자들을 조사하는 경찰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다⁹²⁾. 호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구들이 경찰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여성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0) 성인지 교육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견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 행하고 있는 정미숙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2003. 10. 27)를 통해 정리된 것이다.

91)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글, 2003.

92) <http://www.health.nsw.gov.au>

이 이런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인다.

또한 NGO들도 최근에는 '가해자 안되기 남성 서포터즈 운동',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대회(speak-out day)',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활동', '학생 성교육을 위한 교사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⁹³⁾.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인지 교육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의 성인식과 성감수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수가 성인지력이 있는 경우 이런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 관찰하는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NGO의 프로그램을 성인지 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NGO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경찰과 경찰 내부 교육 전산망에 성교육 전문가의 칼럼을 연재하여 언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성폭력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수사관의 칼럼을 연재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성폭력 수사 경험이 10년이 넘는 한 수사관은 일간 신문의 성교육 전문가의 칼럼이 성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민감성을 지니는 데 다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2차 피해가 문제되는 것은 형사사법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서 기계적인 사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무처리방법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사무처리방법은 오랜 기간을 거쳐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만이 아닌 관행을 대체할 정도의 새로운

9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3년 활동 중 일부이다.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수사와 공판단계 모두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접촉 하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은 1999년 2월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검찰총장 지침'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지침의 엄중실시를 명령하였다.

검찰총장 지침은 앞서 여러 부분에서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크게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기본자세', '수사상 유의사항', '공소유지상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칙적인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는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사담당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된다는 점에서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지침이 존재하고 상부로부터 엄중실시 명령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여전한 것은 지침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2차 피해는 특별한 행위로 인한 가해라기보다는 수사관행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수사관행을 대체할 수사기법이 고안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외적인 지침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침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⁹⁴⁾를 하여 지침준수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남성중심

94) 검사징계법 제2조 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적 수사관행을 대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수사기법을 연구·도입해야 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미국, 영국 등의 수사기법 또는 지침을 번역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나⁹⁵⁾ 외국의 사례만이 아닌 우리의 사정에 맞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그것이 실무상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어 공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만 2차 피해가 문제된다.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성폭력 통념에 기반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의 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변호사법 제1조⁹⁶⁾와 변호사 윤리규칙 제1조⁹⁷⁾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특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74조는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중복신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⁹⁸⁾.

95) 아동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한 지침,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아동증인의 조사지침 등.

96)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97) 변호사 윤리규칙 제1조 제2항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하여야 한다.

98)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그러나 형사소송규칙 제74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상 그 경계가 모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 윤리규정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⁹⁹⁾를 해야 한다. 지침의 마련과 징계는 변호사 협회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만약 변호사 협회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국가는 기본권보장의무¹⁰⁰⁾가 있으며 따라서 판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판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부당한 증인신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의 권리 역시 보호해야 하며, 두 가지 권리의 조화를 꾀하고 형량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원칙¹⁰¹⁾에 의해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다른 형사사법담당자들과는 달리 2차 피해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위반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99)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0) 헌법 제10조 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나 지침은 일반적으로 경직된 행동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의 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판사의 경우 위반시 징계처리를 하는 것에 얹매이지 않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이라는 재판예규¹⁰²⁾를 만들어 법정에서의 자세, 언어, 복장, 증인신문 방법, 변론절차, 증거제출, 양형, 선고 등 재판의 전과정에 대해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판진행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재판예규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법원의 형평성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지향할만한 목표를 정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예규에 준하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증인신문 방법'에 대한 재판예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02) 제정 1994.2.16 재판예규 제378호 개정 1999.10.29 재판예규 제745호(제일 94-1)

제 6 장 결 론

199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의 참담한 현실은 존재하되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와 성폭력을 사회 여론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횡기적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한국은 세계 2위의 성폭력 천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통념들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통념은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바, 이로 인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성차별적 관행과 같은 2차 피해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연구들이 쌓이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입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여성운동계, 학계, 형사사법계에 걸쳐 폭넓게 형성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감의 바탕 위에서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들과 피해자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2차 피해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이 되고 있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 및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성 통념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유발시킨다, 이른바 성폭력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동의된 성관계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고소인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다'와 같은 통념들을 갖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식의 부적절한 증인 신문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통념과 태도는 피해자의 인권, 증거확보,

정보권 등을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도의 미비함과 결부되어 2차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2차 피해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법·제도의 개선점과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과 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법·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제안하였다. 성폭력 범죄는 현재와 같이 나열식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시에도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대시키고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와,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이나 공판참여권과 같은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인정이 요구된다. 그 밖에 친고죄 폐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배상명령 제도 및 재정신청 제도 적용 확대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인,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당자의 인식 전환은 담당자를 양성하는 제도적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의 두 번째 방안으로는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이미 현재 미약하나마 맹아적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법여성학의 제도화 보다는 좀 더 조속히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안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

의 보완 및 실행 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검찰의 지침 구체화 및 수사 기법 개발,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판사의 공판 진행 예규의 마련이라는 안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이제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보다도 철저히 성폭력 피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약56백 여 건의 2차 피해 호소사례 검토와 심층면접이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체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되었고, 그만큼 예방과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안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여성계와 형사사법계의 폭넓은 공감대에서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해자 체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이 연구가 앞으로 2차 피해를 축소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데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권위가 공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는 법적 가부장성의 변화, 양성 우호적인 법 질서의 확립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여성계와 형사사법계는 그동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의 과정에서 밟아시킨 여성계와 사법계와의 공조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질적으로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자료집

- 강은영,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여성폭력예방 수사과정」, 2003
- 경찰청, 「아동학대사건처리- 경찰관용 매뉴얼」, 2002
- _____,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경찰청, 2002
- _____, 「2003 경찰백서」, 2003
- _____, 「경찰혁신을 위한 여성발전방안」
- _____,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2002
- 경찰종합학교, 「경사교육과정 - 기본교재」,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길라잡이 경찰편」, 2002
- _____, 「공보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 2003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 국회인권포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1999
- 김문현·박은정·신인령·이용식·홍정선 편저, 「법과 사회정의」, 이화여자대학교, 2000
- 김순진·김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도서출판 학지사, 2000
- 김우룡·정인숙, 「현대 매스미디어의 이해」, 나남출판사, 1995
- 대검찰청, 「범죄 분석」, 2003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용역 연구보고서,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관례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 99-17, 1999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현황」, 1997
- 문국진, 「아는 사람아 전해주렴」, 동아일보사, 1995
- 문성제, 「현대여성과 법률」, 법문사, 2002
- 미야자와 고이치, *Einführung in die Viktimologie*; 장규원 역,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2
- 사단법인 또하나의문화, 「글로벌 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2001
_____, 「글로벌 시민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2002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침묵에서 외침으로」, 1994
- 성폭력역고소 대책위원회,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자료집」, 2003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3
_____,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 안드레아 드워킨, 「신에게는 딸이 없다」, 이해경 옮김, 동문선, 1993
- 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2002
_____, 「남녀차별 개선활동과 향후과제」, 여성부, 2003
- 여성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특별위원회, 1999
-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출판부, 1998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_____, 「형법각론」, 박영사, 2001
- 이태수, 「개정아동복지법의 고찰」, 2002
- 장(윤)필화, 「여성체험의 공통성 여성 몸 성」, 또 하나의 문화, 2000
-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 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정진수, 「아동 중언에 관한 연구」, 한구형사정책연구원, 2000
- 조국, 「형사법의 성향」, 박영사, 2003
_____,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사람생각, 2003
- 천대윤, 「성희롱정책: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9
- 치안연구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2000
_____,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역동적 치안활동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역할”, 2002
- 프랜시스 하이덴손, 이영란 역, 「여성과 범죄」, 나남출판, 1994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_____,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1993
_____,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건강한 어린이, 어린이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 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_____,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_____,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_____,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예방지침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_____,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_____,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_____,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_____,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_____,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_____, 「법조인의 성별의식과 양성평등교육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3
- _____,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자료집-남성적 관계와 성문화에 대한 성찰」, 2003
- _____, 「한국 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 한국 성폭력상담소, 2000
- _____,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모교육 자료집 - 아동성학대와 교사의 대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1
- _____, 한국아동권리학회·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3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0
- _____,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_____, 「성폭력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 1995
- _____, 「99연구보고서 210-23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동녘, 2001
- 한국인간발달학회,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 _____, 「성범죄 연구보고서 89-04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_____,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 _____,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연구 1, 1990
- _____,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범죄와 피해자 자료집」,

1991

- _____,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1991
- _____, 「1회 워크숍 자료집,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1992
- _____, 「2000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2000
- _____,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00
- _____,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2000
-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20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1994), Washington D.C. 이근우외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집 제4판」, 하나의학사, 1995.
- Estrich Susan, *Real Rape*, 1986; 이영난역, 「진짜강간」, 교육과학사, 1993
- Firestone Schularamith, *The Dialectic of Sex.*, 1970;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 Georges Vigarello, *Histoire du viol*, 1998;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출판사, 2002
- G. 볼스, R. D. 클레인, 정금자 역,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6
- M.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 출판, 1994
- S. 하딩, 페미니즘과 과학, 이재경, 박혜경(공)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Sarsby Jacqueline, *Romantic Love and Society*, Penguin, 1983;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데아 총서, 민음사, 1985

2. 논문

- 곽영숙, "성학대를 경험한 소아청소년의 후유증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2000

- 구수경,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부산여대여성연구논집』, 1993
- 권기선, “피해아동의 초기진술 증거자료 확보방안”,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98
- 김상희,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워크샵, 1992
- 김선영,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 위 청구논문, 1989
- 김선욱,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방향”, 『지구화와 여성시민권』, 한국여성연구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성돈, “우리 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 회, 1999
- 김시형 · 김영정 · 목소희 · 안수진, “Delete! 사이버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김용세, “일본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김원홍, “경찰혁신을 위한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방안”, 경찰청 57주년 여성찰설기념세미나, 2003
- 김일수, “원상회복의 형사재판로서의 의미와 기능”,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 피해자 학회, 1993
- 김현수, “가부장적 테러와 수치심의 심리전”, 『페니스 파시즘』, 개마고원, 2001
-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 위 청구논문, 2002
- 김현정, “아동성학대와 교사의 대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모교육, 2001
- 남정현, “한국에서의 강간”, 『정신건강연구』 제9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90

- 노성호, “호주의 피해자학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 노정연, “성폭력사건의 법적 처리 및 대처방안”, 『가정폭력 · 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류미진,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57주년 여성찰설기념세미나, 경찰청, 2003
- 류전철,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 피해자학회, 2000
- 문국진, 경찰청성폭력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 박강우, “프랑스 피해자학의 생성과 발전”,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 회, 1999
- 박경식, “스토킹 : 새롭게 인식되는 범죄 행위”, 경찰대론문집, 1999
- 박계현, “성폭력 수사 시 요구되는 진료기록-가정폭력 · 성폭력에 있어서 폭력의 법적 의미”, 『성폭력 · 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샵 자료집』, 한국성폭력 상담소 · 서울여성의 전화, 2000
- 박금자, “어린이 성폭력 사건 수사 개선 방향”, 여성범죄 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 박미숙,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박미옥, “성폭력 사건의 수사절차”,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 · 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2001
- 박선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 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순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현대법철학의 흐름』, 법문사, 1996
- 박일환,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

- 회, 1993
- 박철현, “카나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박혜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사학위논문, 2000
- 백광훈,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63, 2001
-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편, 1999
- , “성폭력예방과 여성의 성적 건강권”, 『여성건강』 제1권 2호, 대한여성건강학회, 2000
- 서명선,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과 과제”,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여성의 전화, 1996
-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소은희, “성폭력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2001
- 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강화”,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송영옥, “아동증언의 현주소”,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 여성연구소, 2001
- 신의진, “성폭력피해 후유증 성인 진료시의 유의점”,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샵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 2000
- 심영희,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한국여성학』 제11집, 한국여성학회, 1995
- ,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생생활연구』, 2000

- 심희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의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논문』, 여성부 주관, 2000
- , “아동 성추행·성학대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 안동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안동현, “성폭력피해 아동의 정신과 치료시의 유의점”,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샵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 2000
- 안동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국회인권포럼, 정책심포지움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자료집』, 1999
- 안수진, “스토킹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엄연수,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6
- 오재환,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원형섭, “법적 증거물 채취와 진단서 발부에 관해”,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지속적 치료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2003
- 유선영,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신문과 방송』 7월호, 1994
- , “성범죄 보도가 구성하는 여성신화”, 김명혜·정기현·유세경 편,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나남출판사, 1999
- 윤세정,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윤혜미, “아동보호서비스(C.P.S)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2회 세미나 자료집』, 1994

- 이갑수, “성폭력범죄 수사와 입법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
- 이경미, “성의자율성과 순결이데올로기: 20대 여성의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_____, “성희롱 속에 감추어진 강요된 침묵 건드리기”, 『샘이 싶은 물』 4월호, 1999
- 이경자,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이경재, “영국피해자학의 발전과정과 그 주요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 이금형, “경찰의 연계사례”, 『가정폭력·성폭력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명선, “장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이명숙,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검토”,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아동권리학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 이미경,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최소화 방안”,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여성부·법무부 공동주최, 2002
- _____, “우리나라 여성폭력 추방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 긴급토론회: 여성폭력추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주최, 2002
- _____,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의 문제”, 여성범죄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3
- _____, “성폭력피해 어린이 진술 1회만 하여야”, 『법나들이』, 법제처, 2003
- _____,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자료

- _____, “토론 :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권리 존중”,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조국(편), 사람생각, 2003
- _____, “성폭력 역고소, 강력한 대처를!”, 『성폭력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 토론회자료집』, 성폭력역고소 대책위 대구 여성의전화 특위, 2003
-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예방대책”, 『한국의 아동복지법』, 2002
- 이백수,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 1996
- _____,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내부자료, 2001
- 이상덕,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상돈, “성찰적 법 여성주의-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법철학』, 2003
- 이선경, “아동증언을 위한 환경만들기”,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 권리안전센터, 2003
- 이순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2000
- 이영자,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 5집, 한국여성학회, 1989
- 이재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이재연, “아동증언 인터뷰에서 겪는 어려움”, 『아동증언 Interviewer 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이호균, “아동증언 인터뷰어는 왜 필요한가”, 『아동증언 Interviewer 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이호중, “강간범죄와 형사사법적 통제”,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호, 1991
- _____,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피해구조와 배상적 화해의 간극”, 『피해자

- 학 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장규원, “독일피해자학의 발전과정”,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 장명숙,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에서 바라본 성폭력특별법”, 여연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 _____,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여성학논집』 제11집, 1994
- _____,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1990
- 장임다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발표”, 민변 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2002
- 장혜경,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회의 발제 자료」, 2003
- 장화정, “아동증언을 위한 Interview 기법”,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전희경, “KBS노조간부 성폭력 사건의 여성인권 재점들”, 『성폭력을 다시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 위음, 2003
- 정경자, “피임광고를 통해서 본 성문화 일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_____, “성폭력 피해현황과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정진수, “법 체계상에서의 아동 증언의 위치”,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_____, “형사법체계와 성폭력관련법률”, 여연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 회의자료, 2003
- 정희정, “아동증언을 위한 관계형성 기법”,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

- 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정희진, “‘아내폭력’ 경험의 성별적 해석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조국, “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1
- _____,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토론회, 2002
- _____,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취약집단의 보호”,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토론회, 2002
- 조순경 외,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한국여성학회, 1989
- 조주현,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 『한국여성학』 제9집, 한국여성학회, 1993
- _____,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김정희 외, 현실문화 연구, 1993
- 조중신,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조사상 유의점”, 『법무연수원 제1기 검찰수사과학회 세미나자료집』, 2003
- _____, “아동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2003
- _____, “아동성폭력 피해 실태”, 법무연수원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직무교육, 2003
- _____, “형사상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피해자 2차피해”, 서울시경 여성담당수사관 직무교육, 2003
- 진수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 천근아, “아동의 충격적 경험에 대한 의학적 해석”, 『아동증언 Interviewer기초과정』, 한국아동·청소년권리안전센터, 2003
- 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 활용방안”,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석윤, “미국에서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 최석윤, “피해자와 형법상의 결과불법”,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영애,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_____,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 최인섭, “범죄피해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최희경, “미국헌법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법학과 박사 학위 청구논문, 2001
- 캐서린 매키넌, 엄용희 역,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 표창원, “대여성범죄 경찰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 경찰과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 2001
- _____, “형사절차와 피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을 찾는 시민감시단 교육, 2003
- 표창한, “함께가는 여성”, 「겨울호」, 한국여성민우회, 2001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1991
- 허라금, “서구 정치사상에서의 공사개념과 가부장적 성차별성”, 여성학논집 13, 1996
- 힐러리 찰스워스, “인권 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제3회 김옥길 기념강좌 자료집, 2003. 10.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 “호주법과대학에서의 법여성학 교육”, 이화여대 법과대학 젠더법

- 학연구센터 학술강좌(2003. 10. 16)
- A.Karmen, 조병언역, “피해자 비난론 대 피해자 옹호론”,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A. W. Burgess & L. L. Holmstrom, *Rape Trauma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74 ; 조은경,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 Du Bois Barbara(1983), “열정적인 학문: 여성해방주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가치, 인식과 방법에 관한 소고”, Bowles Gloria and Klein Renate(ed.), *Theories of Women's Studie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Boston and Melbourne.
- H-H, Kuhne, “유럽에서의 범죄피해자 공공보상제도”,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 LONI PAYNE, KARIN SMALL, “아동학대범죄 과학적 수사기법에 대하여”, 경찰청 57주년 여성창설기념세미나, 2003
- 藤本哲也, “일본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1993

3. 회의자료

- 장지원, 영국 진아사건 기자회견 자료, 2003. 6. 5
- 경찰청, 범죄피해 아동 진술녹화 관련 감찰회 회의자료, 2003. 5. 7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아동대책 자문위원회 회의 서류, 2003. 9. 3
-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성명서, 2003. 7. 15
-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간담회 자료, 2003. 6.27
- 법무부,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 회의자료, 2003.

_____,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범죄 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2003. 2. 27

서울지방경찰청 방범부, 여성대책자문위원회 2/4분기 정기회의 회의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자료, 2003. 6

여성부, 여성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회의자료, 2002, 12. 5

_____, 남녀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자료, 2003. 5. 7

_____,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자료, 2003. 5. 26

_____,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활성화 회의자료, 2003. 7. 8

인권위원회, 2003년 인권위원회 집담회회의 자료, 2003. 6. 13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 합헌 결정문, 2003. 6. 26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한 해설, 2000

_____,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3. 7.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원 보수교육 계획 자문회의 자료, 2003. 9. 4

4. 신문기사

부산일보 '성폭력 이대론 안된다' 기획기사 시리즈 ⑤ 협박, 회유에 시달리는 가족
2003. 10.

문화일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색, 2003. 6. 9

연합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 2003. 6. 26

중앙일보, 2003. 10. 30.

5. 기타 참고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상담일지

_____, (2002), 상담일지

_____, (2000), 상반기 토법일지

_____, (2001), 상반기 토법일지

_____, (2002), 상반기 토법일지

_____, (2003), 상반기 토법일지

_____,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심층 인터뷰

_____, 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판결문, 항소이유서

_____, (2003), 경찰 통념조사표 1000부

_____, (2003), 법조인 성인식 · 성평등의식 설문조사 통계

II. 외국 문헌

Abraham P. Ordover, "Admissibility of Patterns of Similar Sexual Conduct: The Unlamented Death of Character for Chastity", 63 Cornell L. Rev. 90, 96-102, 1997

Amnesty International, *SIERRA LEONE: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girls and women*, AFR 51/035/2000 29 June, [cited 2003. 9],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FR510352000?open&of=ENG>

_____, Broken bodies, shattered minds: Torture and ill-treatment of wome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01. [cited 2003. 9]. <http://www.amnesty.org>

_____, Liberia: Killings, torture and rape continue in Lofa County, AFR 34/009/2001 1 August 2001. [cited 2003. 9] <http://web2.amnesty.org/library/Index/engAFR340092001?OpenDocument&of=COUNTRIES\LIBERIA?OpenDocument&of=COUNTRIES\LIBERIA>>

_____, PHILIPPINES: Fear, shame and impunity: Rape and

- sexual abuse of women in custody*, March 2001, ASA 35/001/2001 [cited 2003. 9]. <http://www.amnesty.org>
- _____, UNITED KINGDOM: *Decades of Impurity: Serious Allegations of Rape of Kenyan Women by UK Army Personnel*, EUR 45/014/2003 2 July 2003, [cited 2003. 9].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EUR>
- Bartky Sandra Lee, Irene Diamond & Lee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 Barry Rosenfeld, *Assessment and Treatment of Obsessional Harassment*, Aggression and Behavior 5(6), 2000
- Benson, Donna J. and Gregg E. Thomson, *Sexual harassment on A University Campus*, Social Problems 29, 3, 1982
- Beverly J. Ross,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of Rape*, 100 Dick. L. Rev. 795, 808-810, 1996
- Cristian-Smith, K. Linda, *Romancing the Girl: Adolescent Romance Novels and Construction of Femininity*, in *Becoming Feminism: The Politics of Popular Culture*, Roman & Cristian-Smith(eds.), London: Falmer, 1988
- Cristian-Smith, *Becoming a Woman Through Romance*, New York: Routledge, 1980
- Eke Angela Wyatt, *Stalking offences and victim impact in a forensic sample of Ontario stalking survivors*, York University in Canada, 1999
- Griffin, Susan, *Rape the Politics of Consciousness*, San Francisco: Harper & Low, 1986
- Holland & Eisenhart, *Educated in Romance: Woman, Achievement and College Culture*,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Morrison Morrey, *When Will We Be Believed? Rape Myths and the Idea of a Fair Trial in Rape Prosecutions*, 24 U.C. Davis L. Rev. 1013, 1058-1059,

- 1991
- Jackson Stevi, *Women and Heterosexual Love: Complicity, Resistance and Change*, In *Heterosexuality in Question*, Jackson, Stevi (ed.), Sage Publication, 1999
- Kevin S. Douglas and Donald G. Dutton., *Assessing the link between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Aggression and Behavior, 6(2001)
- MacKinnon Catherine A,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Only Words*, HarperCollins Publishers Ltd, 1994
- Menachem Amir, *Patterns in Forcible Rap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M. Hester & L. Kelly, *Women, Violence and Male Power*, 1996
- Michelle R. McCauley, Janat Fraser Parker, *Inter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2001. April.
- Sanday. Peggy R, *The Socion-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7. No. 4(1981)
-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75
- Russell. Diana E. H, *Sexual exploitation : Rape, child sexual abuse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4
- Violence Against Women Grants Office(VAWGO),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The Second Annual Report to Congress 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7
- _____, *(VAWGO),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The Third Annual Report to Congress under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IJCOC),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NIJCOC),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2000

부 록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공판절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¹⁰³⁾

사건번호 기 일	(차)	재판부 공개 · 비공개	작성자
-------------	-------	-----------------	-----

1. 증인 신문에 앞서

a.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 다음의 증인보호조치^{(특강7, 특신13, 성폭20)[법조문참조]}가 있는가?

(Y- / N- ☐ 비고)

(1) 들어올 때 별도 출입문 사용

나갈 때

(2) 법정경찰의 보호(동행 등)

b. 비공개심리 및 피고인 배제,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성폭22, 특신11, 형소297, 성폭22의2)[법조문참조]}

(1) 비공개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 밑의 인터뷰 ①-⑩에서 확인

(비공개 · 공개)

103) 이 체크리스트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법정지원팀에서 2003년에 개발한 것이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실제 상담활동 및 법정지원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체크의 용이를 위해 증인신문 전과 증인신문 과정으로 항목을 나누고,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지원팀은 성폭력 사건의 공판과정에 참여하면서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데, 개별 사건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을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에 개발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 공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현황을 통계화할 예정이다.

(2) 피고인 등의 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밀의 인터뷰 ①-④에서 확인
(퇴정 · 직접)

(3)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여부, 밀의 인터뷰 ①-④에서 확인
(동석 · 단독)

c. 기타 (Y- / N- ☐ 비고)

(1) 법원 내 장애인시설 완비 ☐

(2) 중인대기실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장소 구비 ☐

2. 증인 신문 上

[공판과정 상 부적절한 증인신문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무관한 내용으로서

유형1.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

☞ 피해자의 품행, 평판, 직업(성매매 업소) 및 성관계 이력 등을 질문

유형2.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

☞ 충분히 반항하였는지 재차질문

유형3. 기타 인격침해성

☞ 삽입시간 · 삽입 시 느낌 · 사정하였는지 여부 질문

참고문헌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pp98~102, 박영사 2003

a. 신문의 내용 (형소299, 형소규칙74, 77)[법조문참조] (Y- / N- ☐ 비고)

(1) 논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 질문하지 않는다

판사 ☐

피고측 변호사 ☐

검사 ☐

b.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노력 (Y- / N- ☐ 비고)

(1)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판사 ☐

피고측 변호사 ☐

검사 ☐

(2) 추궁하거나 위협적인 태도 보이지 않도록 신경쓴다

판사 ☐

피고측 변호사 ☐

검사 ☐

(3) 수치심 유발 여지있는 질문있을 때 적극 제지 (형소299)[법조문참조]

판사 ☐

피고측 변호사 ☐

검사 ☐

(4) 그만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판사 ☐

검사 ☐

c. 기타 [공판정 내 진술권] 피해자 진술을 끊는 경향이 있다

(현27, 형소294의2②)[법조문참조]

[절차지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는다

(시간끌기, 기일 불출석 등으로, 특히 피고측 변호사) ☐

▣ [실효성 확보] 검사는 증인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제기를 한다
(형소304, 형소규칙136)[법조문참조]

3. 공판절차상 어려움 관련 인터뷰

interview① – 증인신문에 앞서

Ⓐ 법정에 출석할 때 보호조치^(위의 1. a. 특강7, 특신13, 성폭20)가 있었나요?

▣

Ⓐ 검사로부터 비공개신청^(성폭22)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질문 사항] 신청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

Ⓐ 불필요한 법정소환 방지^[법조문참조]

(1) 검사로부터 증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성폭22의4)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2) 법정 외 신문^(형소165) 등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 혹은 반대로,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았나요? (진술 신청 받아들여졌는지 여부)^{(현27⑤, 형소294의2)[법조문참조]}

▣

Ⓐ 공판이 지연될 때, 지연이유 등을 설명해 주던가요? 증인대기실 등에 관한 배려가 있습니까?

▣

▣ 피해사실 노출 방지

(1) 소환절차 중 피해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나요?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았나요?^{(특신11, 성폭21)[법조문참조]}

▣

(2) 수사 및 심리 중 출판물 등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았나요?^{(특강8, 성폭20)[법조문참조]}

▣

Ⓐ 피고인 등의 퇴정^(특신11, 형소297)을 원하였습니까?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지는 않았나요?

▣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음^(성폭22의2)을 고지받았습니까?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지는 않았나요? 동석하였다면 어떤 사람인지(친족, 상담원, 변호사)? (단, 성폭22의2에 규정하는 범죄에 한함에 유의)

▣

Ⓐ 형사절차로부터 소외 여부

(1)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와 공판진행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

(2) 고소한 사건의 수사절차 종결 후, 검사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습니까?^{(형소258, 259)[법조문참조]}

▣

(3) 재판기일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검사로부터 기일 조정^{(특신12 등)[법조문참조]}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4) 검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소(본인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해달라고 종용받았습니까?

▣

Ⓐ 기타

(1)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성폭4)[법조문참조]}

- (2)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특강6)[법조문참조]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았습니까? (특신15)[법조문참조]
- (3) 소송 등과 관련하여 법률지원 및 상담, 의료지원 등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interview② – 증인신문 上

- ⓐ 논점(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수치심 유발 또는 비난조 질문을 받았나요?
- ⓐ 신문 시, 판사 및 변호사 등의 신문 자세가 추궁하는 식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나요?
- ⓐ 수치심 유발 여지있는 질문있을 때, 판사 또는 검사가 이를 적극 제지하나요? (형소299)
- ⓐ 판사 및 검사 등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 재판장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현27, 형소294의2②)
- ⓑ 피고측 변호인 등이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이를 재판장이 제지합니까?

- ⓑ 증인신문 등에 대한 재판장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검사가 이의제기(형소304, 형소규칙136)를 하는 것 같습니까?

* 관련 법조문

1-a. 증인보호조치

A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작용범위)

- ①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동에 의한 치사상)의 죄
-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B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동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절차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범죄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시행령]

제6조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 ①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경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사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동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찰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C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 준용)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동의 반포동)·제244조(음화동의 제조동)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동을 위한 락취, 유인, 매매동)·제292조(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동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동 죄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동에 대한 간음)·제303조(임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7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1-b. 비공개심리 및 피고인 배제,

신뢰관계 있는자 동석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

-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

제11조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①②③④(생략)

- ⑤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일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들의 동석)

-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 (주: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의강간등,장애인에대한간음,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강간동상해·치상) 와 제11조(주:업무상무력등에의한추행)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주:미수범)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a-(1) 제한되는 신문내용

b-(3)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유형1. □ 피해자의 품행, 평판, 직업 및 성관계 이력 등을 질문
 →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음을 유의 (특히, 성관계 이력 질문에 대해)

유형2. □ 충분히 반항하였는지 재차질문
 → 증복신문 제한(형소299, 형소규칙74)

유형3. □ 삽입시간 · 삽입 시 느낌 · 사정하였는지 여부 질문
 → 위험적, 모욕적인 신문 금지(형소규칙74), 명예해치는 신문금지(同77)

(1)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증인신문의 방법)

①(생략)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이하 생략)

제77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생략)

- ②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형사소송법]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증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c. 공판장 내 진술권,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생략)

-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형사소송법]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6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 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interview①-② 불필요한 법정소환 방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4 (증거보전의 특례)

-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알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interview①-④ 진술할 기회 보장

[헌법]

제27조 제5항 (피해자의 진술권)

① ② ③ ④ (생략)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interview①-④-(1)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비밀누설금지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

제11조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동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당해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동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interview①-④-(2) 출판물등으로부터 보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이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 준용)

interview①-④-(2) 처분 등에 고지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를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interview①-ⓐ-(3) 재판기일 조정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등)

- ① 범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9조 (소송진행의 협의)

(생략)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의준용)

(샘플)

interview①-차-(1) 불이익처분 금지

「설풀령법」의 첫 법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벌의 극지)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범의 이익제한의 허용)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범의 이익을 줄여서는 아니된다.

interview①-②-(2) 보석취수 및 피고인 신병에 관한 통지

〔통정각령법전의 철법에 관한 통계법〕

제6주 (보석들의 천국)

제6조(보증금의 부과)
법원은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특정법정신고자등보증법」

[국장급회원포상제도] 제15조 (피고의들에 관련된 주요별동사항을 지)

제15조 (피고인들에 관한 본 구속금지 명령 등)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기석방 청구 절정경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등으로 인한 교정시설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등 재판 일시별에 관련된 법적상황을 법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펴낸 날 : 2003년 12월 20일

펴낸이 : 이미경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설플렉상담소

만든이 : 장필화, 김정희, 박종선, 안수진, 이경환,
이미경, 이영라, 조중식

주 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121-884)

연락처 :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홈페이지 : <http://sisters.or.kr>

* 본 사업은 2003년도 법무부의 용역과제로 추진된 것이나, “본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